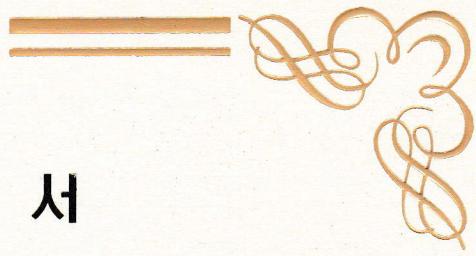




제 201600028 호



## 형식승인서

신청인 성명: 윤철구  
상호: (주)서한에프앤씨  
사업장주소: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샛강영길 5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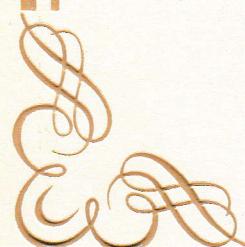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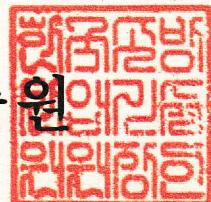
소방시설설치·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·제37조제1항  
및 소방용품의품질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·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 
아래 소방용품의 형식을 승인합니다.

- 품명 완강기지지대
- 형식 내벽 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90°
- 형식승인번호 지지15-15-1
- 조건
- 비고 지지15-15

2016년 01월 13일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



# 검사성적서

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 
Korea Fire Institute

446-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 
TEL: 031-289-2845, FAX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1600028

페이지 : ( 1 )/(총 2)

## 1. 신청인

원본  재발급

- 업체명 : (주)서한에프앤씨
- 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샛강영길 59
- 접수번호 및 접수일 : 제1600002호 2016.01.04.

## 2. 검사성적서의 용도 : 형식승인용

## 3. 검사대상종별/시료명 : 완강기기지지대

## 4. 검사기간 : 2016. 01. 04. ~ 2016. 01. 11.

## 5. 검사방법 :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국민안전처고시 제2015-1호)

## 6. 검사장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
## 7. 검사환경

- 온도 :  $(25.0 \pm 3.0)^\circ\text{C}$ , 상대습도 :  $(55.0 \pm 3.0)\%$  R.H.

## 8. 검사결과 : 합격

※첨부 : 세부 형식시험 결과(2쪽 참조)

확인	실무자 성명 : 정용남 (서명)	기술책임자 성명 : 염문천 (서명)
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위 성적서는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의한 검사결과입니다.

2016년 1월 12일

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



- 비고 1. 이 성적서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 및 시료명으로 검사한 평가결과로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
2. 이 검사성적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광고, 선전 등 홍보 및 소송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,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.

[첨부]

 <p>한국소방산업기술원 Korea Fire Institute</p> <p>446-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 TEL: 031-289-2845, FAX: 031-287-9066</p>		<p>성적서 번호 : 201600028 페이지 : ( 2 )/(총 2)</p>			
<b>형식시험결과</b>					
업체명	(주)서한에프앤씨	형식승인번호	지지15-15-1		
종별	완강기지지대	형식	내벽 부착형, 최대사용하중 1 500 N, 회전각도 90°		
시험항목			결과		비고
조항	항목	기준	시료 (개)	검사결과	
제16조	지지대의 구조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5	적합	합격
제17조	최대사용하중 및 최대사용자수	최대사용하중은 1 500 N 이상의 하중일 것	시험생략		합격 *
		최대사용자수(1회에 강하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수)는 최대사용하중을 1 500 N으로 나누어서 얻은 값으로 할 것	시험생략		합격 *
제18조	재료	금속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, 비내식성 재료일 경우 내식가공 등을 할 것(다만, 외벽부착형의 경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(KS D 3698)를 사용할 것)	시험생략		합격 *
		내식가공 확인을 위해 염수분무시험방법(중성,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(KS D 9502))에 의하여 5회(시험기 운전 8시간, 방치 16시간이 1회) 시험하는 경우 부식생성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	시험생략		합격 *
제19조	강도시험	연직방향으로 최대사용자수에 5 000 N을 곱한 하중을 가하는 경우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	2	적합	합격
제20조	충격시험	지지대를 제조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시공한 후, 표준강하속도를 가지는 시험장치 또는 특정 완강기를 지지대에 설치한 상태에서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부착부분으로부터 강하방향의 반대방향으로 0.5 m 높이에서 최대사용하중의 충격하중으로 낙하시키는 경우에 파괴·균열 및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고 원활하게 작동될 것	2	적합	합격
제21조	표시	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시험생략		합격 *
<p>“*” 표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 항목임.</p>					

끝.